

食品衛生에 関한 法規小考

2

事務官 朴奉相

保社部・食品衛生担当官室

前号의 主要目次

一。法規의 必要性

二。法規의 目的

三。用語의 吏

1. 食品이란?

2. 添加物이란?

3. 器具란?

食中毒 같은 事故는 食品을 製造하는 경우에 그에 사용한 器具나 機械가 汚染되어 있어서 그것이 原因이 되어 發生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食品衛生法의 規定에서는 이와 같은 器具・機械등을 「器具」라고 하여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즉 食品을 먹는다던지, 마신다던지 하는 경우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젓가락, 숫가락, 그리고 食品을 製造하기為한 機械나 器具, 加工이나 調理하기為한 도마판 같은 器具, 機械나 或은 贯藏을 目的으로 한 冷藏庫 같은 器具, 機械, 運搬具, 陳列케이스등은 食品에直接接觸하는 것으로서 規制의 対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業用의 쟁이, 삽이라든지 水產用의 網 같은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器具에 包含되지 않으나 乳의 採取用 器具는 規制의 対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食品衛生法 第2條第4項에서 “器具라함은 飲食 및 其他食品 또는 添加物의 採取, 製造, 加工, 調理, 貯藏, 運搬, 陳列, 授受 또는 摄取에 使用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에 直接接觸되는 機械器具를 말한다”라고 規制하고 있다.

4 容器・包裝이란?

우리들 모든 人間生活은 大部分 衣料없이는 지날 수가 없듯이 大部分의 商品도 包裝없이는 않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商品包裝의 目的 크게 区分할 것 같으면 속에 들어가는 食品을 保護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와 또는 갖이기 쉽게 하기為하여 包裝하는 경우와, 運搬의 単位를 目的으로 하기為하여 使用하는 경우등이 있다. 즉, 容器는 大体의으로 이와같은 目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必要할때 特定의 場所에 必要한 만큼 가장 必要로하는 狀態로 保存하기 위하여, 食品의 輸送이나 保管을 함에 있어서 그 食品의 價値나 狀態를 지키려고 하는 容器가 바로 包裝인 것이다. 그러므로 食品衛生法에서는 이것을 一目瞭然하게 한데 끓어서 容器包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販売할때, 그대로 引渡되는 竹籃(缶), 瓶, 箱子, 托袋(袋) 같은 것을 容器 包裝이라고 生覺하여도 좋으나 이와같은 것이 衛生的인 것이 아닐때에 食品에 依한 疾病의 發生事故가 있는 것으로써, 이것 또한 食品衛生法에서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즉 食品衛生法 第2條第5項에서 “容器, 包裝이라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넣거나 싸는物品으로서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授受할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라고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5. 標示란?

人間은 戸籍이란 것이 있어서 사람이 갑자기 事故로 因하여 죽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年齢이 몇 살이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름은 누구이라 하고 알 수가 있을 것이다.

食品에 있어서도 꼭 이와같은 戸籍과 같은 것이 있어서 標示를 하게 하여 食中毒의 原因이 된 食品은 어느 製造加工會社에서 製造加工된 것인가 하고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勿論 添加物에 있어서도 또는 器具에 있어서도 標示를 하게 하는 体制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標示는 모든 食品, 添加物, 器具에 行하여지도록 함이 理想이었으나 그 種類와 數는 꽤

많은 것으로서 일일이 規制하는 것이 떠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도 特히 必要로 하는 食品·添加物을 定하여 그 食品, 添加物에 對하여 一定事項을 標示하게 하는 義務를 負하고 있는 것이다.

食品衛生法第2條 第6項에서 “標示라함은 食品添加物·器具 또는 容器, 包裝에 明示된 文字 또는 図形을 말한다”라고 規制하고 있다.

6. 営業이란?

食品衛生法에서는 営業者에 對하여 特別한 義務를 課하고 있기 때문에 営業者の 範囲를 定하기에는 꽤 많은 問題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營業이라고함은 業으로서 食品을 採取·製造, 輸入, 加工, 調理, 貯藏, 販売등을 行하는 것이나 業이라고 하는 뜻은 通常 同種의 行為를 反復的 繼続的으로 遂行하고 反對給付가 있는 것이 社會通念上 事業의 遂行이라고 볼 수 있을 程度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社會通念上 그것이 事業의 遂行이라고 볼 수 있을 程度의 社會的地位를 形成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決定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営業者라고함은 営業을 営為하는 自然人 또는 法人을 말하는 것이다. 食品衛生法第2條 第8項에서 “營業이라함은 食品 또는 添加物을 採取, 製造, 加工, 輸入, 調理·貯藏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包裝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라고 規制하고 있다.

四. 食品衛生上의 原則

食品衛生法의 目的是 앞서 言한 바와 같이 이法律의 目的을 達成하게 하기為하여 食品取扱者에게 꼭 지켜야할 原則을 이法律에서는 定하고 있는 것이다.

즉 食品을 取扱함에 있어서는 清潔하고 衛生的으로 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当然한 것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清潔 할지라도 赤痢菌이나 大腸菌 같은 細菌이나 硫素 같은 有毒有害한 物質이 附着 또는 含有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와 反對로 不潔한 感이 들지만 때로는 衛生上 極히 良好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衛生의이라고 하는 것은 그 自体가 客觀的으로 科学的인 것 같이 生覺되나 무엇이 衛生의 인지가 簡単하게 証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清潔」과 「衛生的」이라고 하는 것을 比較하여 보면 普通은 両立할 수 있는 것이나 「清潔」이라고 함은 그 取扱을 前提로 하여 비로소 「衛生的」인 狀態를 確保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람의 健康을 지키게 되는 것으로써 이 두 가지 條件의 滿足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 情潔하고 衛生의이어야 하는 것은 가령 어떤 物件을 깨끗한 물에 씻었다 하더라도 먼지가 많이 飛散하는 道路上에서 容器같은데 넣어 말린다던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原則에 反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簡単한 것이라도 이것을 充分하고 滿足하게 하는 것은 一面 大端히 힘이 드는 것이며 그 大端한 것을 食品取扱者에게 要求하고 있는 것이 食品衛生法인 것이다.

그리하여 清潔하고 衛生의取扱을 要求하게 하는 것은 食品이나 添加物에 限하지 아니하고 器具나 容器包裝에 對하여도 거의 같은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清潔維持나 衛生的措置등은 비록 製造, 加工, 調理, 販売 등 行為에만 局限하지 아니하고 工場이나 寄宿舎, 學校, 病院 같은 集團給食施設에도 이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며 이 法律의 準用規定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五. 臨檢等

1. 販売가 禁止되어 있는 것

1) 腐敗・變敗한 것 또는 未熟한 것

썩은 것, 色깔이 變한 것, 形態가 變하여 있는 것, 또

는 잘 팔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腐敗 또는 變敗의 差異에 對하여는 學問的으로 여러 가지 說이 있는 것 같으나 여기에서는 이 以別이 어떻게 되여 있던지 間에 그 두 가지를 列舉하여 있기 때문에 함께 規制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썩었다던지, 色깔이 變했다던지 그 形態가 變했다던지 하는 것은 販売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腐敗・變敗한 것일지라도 慣慣上 飲食에 쓰는 것이 있으며 이때의 있어서 衛生上 危害의 發生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許多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健康을 害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許容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有毒, 有害한 物質이 含有되었거나 附着하고 있는 것

다음으로 販売등이 禁止되어 있는 것은 有害한 것이 含有되어 있는 것이다. 食品自体는 毒作用이 없지만 그 食品이 사람의 健康을 害할 物質을 含有하고 있다는지 附着되어 있는 食品같은 것은 販売등이 禁止되고 있는 것이다.

다면 이 경우 예를 들자면 “복”의 毒이나 감자와 “쏘라닌”과 같이 그 程度나 處理方法에 依하여 安全한 것은 販売등이 許容되고 있고, 農藥이 農作物中에 조그만치 남아 있다 하더라도 生產上 그 混入이나 添加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경우一般的으로 사람의 健康을 害하지 않는다고 認定할 때(殘留農藥許容基準)에는 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3) 病原微生物에 依하여 汚染되어 있는 物이나 汚染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것

세 번째로 禁止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赤痢菌, 腸티브스菌과 같은 것이 飲食으로 因하여 전파되는 伝染菌이나, 쥐 같은데에 附着되어 오는 사루모래라菌, 傷姬가 化膿되어 있는 손으로 食品을 만졌다던지 하여 附着하는 ポ도球菌 같은 것이, 混入하거나 附着되고 있는 食品등이 바로 이것이다.

一般的으로 썩은 것을 먹었다면 食中毒이 發生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食中毒의 原因이 되

는 食品은 이의 病原微生物에 汚染되어 있는 食品이 主이고 이와같은 것은 눈으로 보았을때는 全然 알 수가 없는 것이다.

食品收扱者가 普通衛生的으로 清潔에 注意를 하고 이와같은 食品이 되지 않게 하기 為하여 極端의 注意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4) 不潔, 異物의 混入・添加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健康을 害하거나 害할 우려가 있는것).

내 번째로는 販売등이 禁止되어 있는 것으로서 不潔한 것이나 둘멩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인 것이다.

以上의 내 가지가一般的으로 適用하고 있는 規定인 것이다. 그리고 食肉에 對하여는 以外에 特別한 規定이 있어 販売등이 禁止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牛疫, 豚코레라 같은 病에 걸렸거나 또는 걸려 있다고 疑心되는 것이나 焐死한 獸畜의 肉인 것이다.

이와같은 規定에 違反하여 食品을 製造, 加工, 調理, 販賣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食品衛生法의 處罰은 勿論, 特別法인 保健犯罪團束에 関한 特別措置法에도 適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2. 化学的合成品에 関한 制限

여러 가지 意味에서 좋은 食品, 세로운 食品을 만들고자 하는 慾望은 社會의 自然的 姿勢인 것이다.

지난날, 예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努力에 依하여 여러 가지 좋은 食品이 生産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形態로서 많은 食品이 나타났던 것은 事實이다. 특히 科學이 發達한 現在 또는 將來에서는 加一層 더 많은 樣狀의 食品들이 製造・加工하여 市販될 것이다.

그렇지만 세로운 物質의 食品添加物이 出現하는 것은 決코 放置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와같은 種類의 物質이 毒性에 차한 問題點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健康을 害하지 않는 경우에 保健

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것 以外의 것을 添加物로 하여 使用코자 目的하는 化学的合成品이나 이것을 함유한 製劑나 食品의 販売 또는 取扱을 禁止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違反할 때에도 前述한바와 같이 食品衛生法 또는 保健犯罪團束에 関한 特別措置法에 따라 奬罰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食品・添加物의 規格과 基準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食品이 좋으나 나쁘나의 判定은 정밀 容易한 일이 아닐뿐더러 또한 이를 判別함에 있어서 所要時間도 問題가 되고 有害與否를 簡單히 判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事故가 난 경우에도 正確한 处置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그러기에 食品衛生法에서는 販売用의 食品, 添加物의 製造, 加工, 使用, 調理, 保存, 販売등을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4. 器具 및 容器包裝에 對한 規制

器具나 容器包裝도 清潔하고 衛生的이 아니고서는 不得된다고 하는 것도 食品이나 添加物의 경우와 같은 것이나 그 性質上 営業用의 것에 限定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食品의 경우 食品衛生法第4條에 依하여 禁止되어 있는 것이 明示되어 있으나 이에 對應한 것으로서 器具나 容器包裝의 경우는 有毐, 有害한 物質이 含有하였다던지 附着되어 있다던지 혹은 食品같은데 直接 接触하여 有害한 영향을 가져온 結果, 人体에 害를 가져 오는 器具, 容器包裝의 販売, 販売를 하기 為한 製造, 輸入, 営業上의 使用은 禁止하고 있는 것이다.

5. 標示의 規制

保健社會部長官은 国民保健上必要에 따라 食品・添加物에 對하여 標示의 基準을 定하겠음 되어 있다. 이와같은 基準은 다음의 두가지 方法으로 生覺할 수 있다.

첫째의 生覺은 消費者側의 必要에 따른 것이다.

하겠다. 消費者인 손님은 普通 새롭고, 맛이 있고, 衛生上支障이 없는, 信用있는 店舗의 食品을 사고 싶어한다. 勿論 그값이 싸다고하는 것도 하나의 條件이 되겠으나 이것은 經濟上의 問題이기 때문에 除外한다 하더라도 먼저 새로운 것인가, 오래된 것인가에 对하여는 그 食品이 만들어진 日字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라고 하는 것을 하기為하여 製造年月日을 標示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은 大体的으로 個人個人의 食性에 依하여 틀리는 것으로서 標示하고는 関係가 없다. 그러나 雪糖을 使用하지 아니하고 烹 кар린을 使用하여 甘味를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에는 人工甘味料를 使用하였음을 標示할 必要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添加物은 毒性 같은 点이 문제가 되는 것을考慮하여 이의質添加한 物의名稱이나 分量을 標示하게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信用이 있는 메이커의 것은 食品을 製造한 製造業所의 名稱이나 所在地가 쓰여져 있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를 標示하게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以上은 消費者인 손님의 側으로부터의 標示에 对한 希望인 것이다. 關係官署가 臨檢하는 경우 그 食品을 製造加工한 製造業所의 名稱이나 所在地를 알지 못하면 臨檢에 있어 꼭 많은 支障이 있게 된다. 또한 통조림 같은 것처럼 一時에 大量으로 製造加工되는 것은 만약의 경우 事故를 낸 製造業所의 통조림을 事故日字別로 于先의으로 回收할 必要가 있게 되어 製造한 日字를 標止하게 할 必要가 있다.

勿論 添加物에 있어서도 그 名稱이나 分量을 標示하게 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것은 모든 食品이나 添加物 같은데 붙이게 하는 것이 理想的일 것이다.

그러나, 商品을 파는 立場의 側에서는 日字를 正確하게 標示되고 있다면 오래된 것이 잘 팔리지 않아 지장이 있게된다. 製造業所의 所在地를 正確하게 나타낸다면 이것 또한 壳買에 힘이 든다는 경우

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통조림 같은 것은 説에 依할것 같으면 약 50年 가까이 保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衛生上의 問題는 別로 없을 것이나 오래된 것이 팔리지 않아서 점점 남게되면 販売를 하기에 힘이들어 標示를 反對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膳物인 경우 그 膳物을 製造加工한 製造業者는 서울인데 그것을 설악山의 土產物 販売所에서 그 製造業所에 注文하여 만들게하고 설악山 名物이라고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名物에 对하여 製造한 製造業所의 名稱과 住所를 標示하려고 할때는 설악산名物에 对하여 서울에서 製造加工되었다고 標示하는 것은 営業上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生覺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商品을 販売하는 側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대로 標示하지 않는 方法이 좋은 것으로 生覺되기 때문에 이 法에서는 衛生上의 觀點에서 考慮하여 꼭 必要한 것 만큼 選択하여 必要한 食品이나 添加物에만 標示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標示에 있어서의 規定은 食品衛生法第9條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国民保健上 危害한 標示나 虛偽의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規制를 食品衛生法第10條에서 明白하게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一般食品이나 添加物에 있어서의 標示의 基準도 食品衛生法施行規則에서 具體적으로 다음表와 같이 規制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標示事項은 容器包裝의 보기 쉬운 곳에 正確하게 우리 한글로 標示하게 하고 있으며 容器包裝의 위에 새로이 再包裝하는 경우에는 再包裝한 容器包裝에 다시금 標示하게 하고 있다.

6. 指導監督

上述한 바와 같이 食品衛生法上의 여러 가지 臨檢·取去·検査등은 食品衛生監視員을 第一線으로 하여 実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行政機構로서는 保健社會部가 全國的 總括的, 企劃立案을 行하고 地方的으로는 各市·道에 衛生主管局이 있

食品等 標示一覽表

備考 1 ○-固有名稱은 加工乳 = 加工乳 茶類 = 茶類食品 粉末清涼飲料 = 粉末清涼飲料 유통구수료 = 유통구수료 으로 標示함.

여臨檢、取去、検査등을 行하고 있는 것이나 具体的으로는 保健所에 勤務하는 食品衛生監視員을 通하여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監視員은 각各 任命權者의 命을 받아 監視를 한다던지 設備의 改善이나 食品의 衛生의 取扱 등에 對하여 指導를

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行하는 食品衛生監視는 그 監視回数를 이法律第18條를 根據로 하고 있고 具体的으로는 食品衛生法施行令第5條에서 다음과 같이 規制하고 있다.

食品業所에 대한衛生監視回数一覽表

營業의種類	臨檢回数	
飲食店營業	1年에 4回以上	
遊興飲食店營業		
茶菓店營業		
簡易飲食店營業		
集團給食所		
乳類販賣業		
食肉〃	1年에	
魚肉類〃	3回以上	
食用油 음〃		
魚肉類競賣業		
食品小分業		
集乳業		
乳處理業		
食品의 냉장·냉동업		
乳類運搬業		
食肉運搬業		
冰菓製造業		
엿류〃	食肉製品製造業	
두부류〃	魚肉〃	
절임식품류〃	통조림(병조림)〃	
菓子類〃	茶類〃	
乳製品〃	清涼飲料〃	
加工乳〃	添加物〃	
마아가린(쇼트닝)〃	장류〃	
食用油脂〃	식초〃	
면류製造業	영양 강화식품〃	
食用油 음〃	고추 가루 등〃	
糖類〃	乾布類〃	
酒類〃	食品加工業	
인스탄트식품〃	添加物〃	
器具·容器·布裝 또는 장난감의 製造業과 販賣業	1年에 1回以上	

海外短信

꼬마들 코마살에 特別基
準 美國聯邦交易委員會에
서 檢討

現代廣告에 關한 美國 聯邦交
易委員會에서 71年 10月 20~26
에 와신頓에서 開催된 公聽會結
果로서 꼬마들에게 企図된 TV廣
告에 特別한 規則을 考慮하도록
되었다. 이 公聽會에 関한 告知
以外에 어떠한 目的도 公開되지
않았지만 美國聯邦交易 委員會는
71年 8月25일의 Federal Regis-
ter로서 다음과 같은 警告를 發
表하고 있다.

「꼬마들을 為해서 製作된 广告
에 對해서 特別한 基準을 設定해
야한다는 根拠는 테레비가 特殊
한 媒體이기 때문이다. 이 基準
을 만드는데 있어 包含될 事項을

充分히 알기 為해서 当局으로서 를 制限하는것 같은 境遇는 그 行
는 꼬마들이 어떻게 배우며, 어떻
為는違法임.

게 깨다르며, 어떻게 決定을 내
리는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한다.
公聽會에서의 단 目的是 广告
가 視聽者에 對해 肉体的, 精神的,
情緒的인 反應에 따라 認知되지
않는 말없는 訴求方法利用과 广
告가 주는 恐怖, 紧迫 程度等을
테스트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Thomas G. Krattermaker氏(美
國聯邦交易委員會消費者保護局의
아시스탄트다이렉타)와 Basil J.
Menjines氏(同委員會公正去來委
員長)들은 產業界에서는 自主規
制를 해야한다고 發言하고 自主
規制로서의 다음 内容의 가이드
라인을 提案했다.

① 그企劃이 實質的으로 장사

② 그企劃이 著界一部 또는 數
個社에 惡影響을 주는것 같은 結
果가 될 境遇 그 制裁가 該當者
가 視聽者에 對해 肉体的, 精神的,
에 防禦할 權利를 준 다음에 取
해졌음이 証明되어야함.

③ 그企劃은 著界教育에 對해
協調하여야 한다.

④ 그企劃이 基準에 依해서 된
것이라면 그들 基準이 明確해야
하며 그 活用에 있어서 法을 어
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Food Chem, News 13 (23) 1971)

